

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표

▮ 주요사무일정 2

▮ 세부일정 4

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4. 4.(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4. 4.(금)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6. 3.(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86②
4. 9.(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25. 2. 28.)	법§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법§60②
4. 14.(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26의2③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4. 24.(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 전 40일까지	법§218의12
4. 30.(수)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법§218의12
5. 4.(일)까지			
5. 4.(일)에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 전 30일에	법§218의13①
5. 4.(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53②
5. 6.(화)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①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①②⑤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0.(토)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법§49①
5. 11.(일)까지			
5. 11.(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법§44①
5. 12.(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5. 12.(월)부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법§82조의2①
6. 2.(월)까지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5. 14.(수)까지	선거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5. 17.(토)까지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5. 20.(화)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5. 20.(화)부터 5. 25.(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5. 21.(수)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5. 22.(목)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법§44①
5. 24.(토)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5. 26.(월)부터 5. 29.(목)까지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①
5. 29.(목)부터 5. 30.(금)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 29.(목)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①
6. 3.(화)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3.(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20일까지	규§51의3①
7. 14.(월)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정금법§40① 민법§161
8. 12.(화)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70일 이내	규§51의3②



「공직선거법」은 “법”,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병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로 각각 약기함.

재외선거 :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상시	법§112~§1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 (정당, 방송,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법§108③
1. 31.(금)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2이상 공관을 둔 국가는 대사관)	매년 1월 31일까지	법§218의5④
4. 4.(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법§60의2②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중앙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 번역문 첨부) 제출 <중앙위원회에>			
	기탁금의 100분의 20(6천만 원) 납부 <중앙위원회에>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중앙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규§24②
	피선거권 조회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 신고 <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2③④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①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 신고 <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 신고 <중앙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신고(수회 발송하는 경우 최초 신고 시 일괄신고 가능) <중앙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중앙위원회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예비후보자 당적 조회 <정당에>	중앙위원회	매월 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 기준	법§60의2⑨ 규§26⑤
	전과기록(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조의2⑧ 규§20⑦
4. 4.(금)부터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법§218의4④ §218의4⑤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공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법§218② 규§136의2①②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정당, 공관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중앙위원회		법§218② 규§136의2③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법§218⑧ 규§136의2⑤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218의34① §39② 규§12①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 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4. 4.(금)부터 4. 24.(목)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법§218의4·6· 8·12 규§136의4, 5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결과 안내 <대상자에게>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4. 4.(금)부터 5. 11.(일)까지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 전까지 (광고게재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①③ 규§60②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137조의2①⑥
	선거기간 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4.(금)부터 6. 3.(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법§89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90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93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법§103⑤
	투표용지모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법§108②
	의정활동 보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4. 4.(금)부터 6. 13.(금)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0의2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4. 4.(금)부터 7. 3.(목)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61의2① 정금법§34①④ 정금규§32② §34①
4. 5.(토)까지	재외국민수 현황 통보 <재외위원회에>	공관의 장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까지	규§136의16①②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국방부장관		
4. 7.(월)부터 5. 11.(일)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 시까지	법§48②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9.(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25. 2. 28.)	법§4 규§2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법§60②
4. 9.(수)부터 6. 3.(화)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4①
4. 9.(수)부터 6. 13.(금)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146의2 규§67①
4. 14.(월)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26의2③ §51①②
4. 14.(월)부터 7. 3.(목)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4. 14.(월)부터 7. 3.(목)까지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추가 재외투표소(병영내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		재외위원회 설치 다음 날까지	규§136의16③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위촉한 때 지체없이	법§218⑥ 규§136의2⑦
4. 22.(화)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법§65⑦
4. 24.(목)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선거일전 40일까지	법§218의5 §218의12 규§136의4
4. 25.(금)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4. 25.(금)부터 5. 25.(일)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법§218의2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26.(토)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법§38③
4. 30.(수)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접수 후	법§218의7 규§136의6
4. 30.(수)부터 5.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법§218의8·9 §218의12 규§136의8
5. 1.(목)부터 5. 9.(금)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 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조의3①
5. 2.(금)까지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중앙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법§64③ §65⑬ §66⑧
5. 4.(일)까지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 <해당 기관에>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53② 법§13③ 규§3③④
5. 4.(일)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 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11②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받은 후 지체없이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의 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36의33①	
5. 5.(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의 교부 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60의3④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5. 6.(화)부터 5. 10.(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① 규§10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재여부 확인			법§37③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거소·선상투표 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법§38①② 규§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법§38⑤⑥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구·시·군위원회에)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5. 7.(수)까지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법§71⑤ 법§218의14①
5. 8.(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명부확정 후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 기간 및 방법 등 함께 공고)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44②③ 규§13③
5. 9.(금)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조의3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71⑥
5. 9.(금)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⑥
5. 10.(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법§46⑤ 규§18④
5. 10.(토)부터 5. 11.(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①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 시	법§49④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중앙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중앙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중앙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중앙위원회에>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 번역문 첨부) 제출 <중앙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 제출 <중앙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중앙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중앙위원회에>			법§49④ §56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법§71⑥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규§24②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변경 신고 <관할위원회에>			법§61① §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 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없이	법§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 신고 <관할위원회에>		선임·교체 신고 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변경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신고 <관할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9⑧ 규§20③
	전과기록 조회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법§49⑩ 규§20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규§71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후보자 사퇴 신고 <중앙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후보자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공고·통지 <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중앙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 정당에>			법§52④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사유발생 시	규§22
	정당·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배부전까지	법§138④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정당 (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의2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발행 즉시	법§139③
	선거공약서 배부 신고<중앙위원회에>, 제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신고: 배부일 전일까지 제출: 배부 전까지	법§66⑥
	현수막 표지 교부 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법§67① 규§32②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신문광고 전까지	법§69⑤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자	방송광고의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규§35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 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37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 소요시간 등의 통보 <중앙위원회에>		후보자연설 방송일 전 2일까지	법§7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79⑥⑩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신고 <중앙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48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국용 무료승차권 발급 인증서 교부 신청<중앙위원회에> 및 무료승차권 발급 신청<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후보자	무료승차권을 발급 받으려는 때	법§83 규§46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에게>·공고 <발송인 주소 미기재 시>	우체국장	우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 시	법§218의14① §71⑥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중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법§218의14④ 규§136의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5. 11.(일)까지	경력방송 원고 제출 <중앙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추가등록의 경우 추가등록과 동시에)	법§73⑤ 규§38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11.(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16①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5. 11.(일)부터 5. 13.(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5. 12.(월)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46②③ 규§18③
5. 12.(월)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5. 12.(월)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5. 12.(월)부터 6. 2.(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 중	§82의2①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218의14① 규§35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12.(월)부터 6. 3.(화)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중앙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법§49①
5. 13.(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법§149①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초청 대상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23②
5. 14.(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에>	중앙위원회		법§73① 규§38②
	후보자 등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신청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법§71⑦ 규§36②
5. 14.(수)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투표 사무원 성명 등 공고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요청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정당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없이	규§70③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 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 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법§149⑤ 규§70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 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중앙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 전 2일까지	법§74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14.(수)부터 5. 21.(수)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 <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5. 16.(금)까지	후보자 추가등록 신청 <중앙위원회에>	정 당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정당추천 후보자가 사망한 때)	법§5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일시· 시간대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중앙위원회	방송연설 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71⑧⑨ 규§36③④
5. 16.(금)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명· 일시·시간대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중앙위원회	방송연설 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218의14① §71⑧⑨ 규§36③④
5. 17.(토)까지	선거벽보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법§65⑥
5. 17.(토)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추천정당)	선거일 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하나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법§218의20④
5. 18.(일)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투표용지 발급기용 DB)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규§136의17
5. 19.(월)까지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추가투표소는 운영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규§136의15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20.(화)까지	책자형선거공보 (전자형선거공보 포함) 발송 <매세대에>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5. 20.(화)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신고 <중앙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선거일 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5. 20.(화)부터 5. 25.(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중 재외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법§218의20③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22 규§136의20⑥ §136의21③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 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218의22④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공관 개표소 설치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 시)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 시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공관 개표소 설치 여부 결정(사유발생 시)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 개표소 설치 공고 및 통지 등(사유발생 시)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공관개표 실시 결정 후 지체없이	법§218의24④ 규§136의25②
5. 21.(수)까지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5. 22.(목)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 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 규§16의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23.(금)부터 6. 3.(화)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 시마다	규§16조의2⑤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법§44②
5. 24.(토)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65⑥ §154①⑤ 규§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법§65⑥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사전)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78③	
5. 24.(토)부터 6. 3.(화)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 20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5. 25.(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 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9일까지	법§148②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성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장에게>			법§154의2①
5. 26.(월)부터 5. 29.(목)까지	선상투표 및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전송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조의3
	선상투표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법§158의3⑩ 규§86의3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5. 27.(화)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 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88①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5. 28.(수)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6일까지	규§68④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 규§3③ §88①
5. 29.(목)부터 5. 30.(금)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및 관내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5. 29.(목)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 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 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5. 31.(토)까지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 시) <재외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일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 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하나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6. 1.(일)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법§181② 규§102①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	법§44의2④
6. 2.(월)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법§151① 규§16의2③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 규§67의2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 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법§173 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④ 규§102
6. 2.(월)까지	공관개표소 설비(사유발생 시)	재외투표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규§136의25④
	투표참관인 교체 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 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법§181② 규§102④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인계 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인계 시	법§151⑤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재지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장	선거일 전일까지	법§158의3⑧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3⑧
선거일 6. 3.(화)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제10장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8시까지	법§155⑤ §176①②③ 규§96①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8시까지	법§218의23② 규§136의24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8시 후에	법§176④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법§170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제11장 법§218의24①②
	개표록 송부 (시·도위원회에)		개표록 작성 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법§185③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지체없이	법§187①③
	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재외위원회	오후 8시 후	법§218의24③~⑥ 규§136의25
6. 3.(화)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에 복직 금지	선거사무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6. 13.(금)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중앙위원회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6. 18.(수)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 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중앙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규§25④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중앙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중앙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④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요청이 있는 경우)	법§49⑨
6. 23.(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법§122의2①③ 규§51의3①③
	정치자금에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 현재	정금법§40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7. 3.(목)까지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중앙위원회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수입징수관에게 납입			법§57② 규§25②
	당선소송 제기<대법원에>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 후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중앙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령§16
7. 14.(월)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 <중앙위원회에>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는 그 익일)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7. 20.(월)이내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중앙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 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중앙위원회	공고일부터 6개월	정금법§42② 정금규§41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 납부 <중앙위원회에>	사본교부 신청인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 사본교부신청 시 수입인지 첩부	정금법§42③ 정금규§41②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중앙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중앙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중앙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중앙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⑦⑧
8. 12.(화)까지	선거비용 보전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7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 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중앙위원회에>	해당 정당, 후보자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중앙위원회에>	해당 정당, 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 위탁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앙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2. 3.(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거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에 복직 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법§60②